

함양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9.21 vol.180

www.jthink.kr

연구진
장세길 -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9.21 vol.180

CONTENTS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1. 혐오사회와 포용국가	4
2.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필요성	6
3. 사례로 본 전북의 문화다양성	7
4.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과 과제	11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3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밭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 혐오와 배제를 극복하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와 문화다양성

- 한국사회에서 폭발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 공모(共謀)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극복하는 방안 역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함
-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함
- 문화다양성은 특정 집단(문화)이 모든 것을 독식하거나 자신의 집단(문화)으로 다른 집단(문화)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집단 간 차별과 배제 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 즉 ‘차이(다름)’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유하고, 공존하는 것(가치관, 또는 삶의 방식)을 말함
-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창조를 통한 창의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 포용국가, 포용사회, 포용도시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발전을 위한 첫걸음임

□ 사례로 본 전북의 문화다양성

- 전라북도에서 4대 종단(원불교·개신교·불교·천주교)이 손을 잡고 종교의 공존과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와 달리, 2015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입주 반대는 지역에서 이슬람(무슬림)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격렬함을 보여줌
- 영화표현의 해방구라는 칭호를 받으며 호평을 받는 전주국제영화제와 달리, 2018년 개최된 전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지역 내 목소리는 영화 밖 현실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표현의 차별과 배제가 여전한함을 말해줌

□ 포용사회의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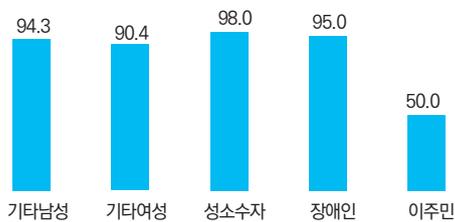
-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지원 또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바, 국가와 지역을 운영하는 가치·철학으로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전라북도가 포용적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대사회와 지역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가치와 철학으로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둘째, 지역 내 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나 표현이 발견되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차원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가 필요함
- 셋째, 정부의 정책추진에 발맞춰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1. 혐오사회와 포용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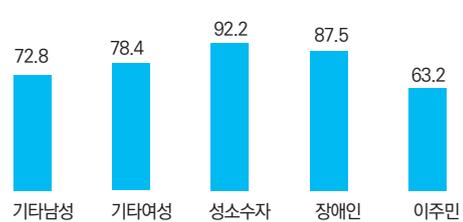
□ 혐오를 설계하고 공모하는 사회

- 『혐오사회』를 쓴 카롤린 엠케(2017)는 혐오와 증오를 “단순히 실수로 또는 궁지에 몰려서 자기도 모르게 분출하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훈련되고, 양성된 감정”으로 정의함
 - 그에 따르면, 혐오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혐오폭력은 준비된 것이며,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혐오와 혐오폭력이 가해지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 것임
 - 혐오사회에서 소수자(예: 무슬림, 동성애자)는 주류집단의 어떤 표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타자화(他者化)되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취급되지만, 소수자들이 집단화(무슬림‘들’, 동성애자‘들’)되면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인식됨
- 사회적 공모(共謀)로 만들어지는 혐오는 “동질적이면서 본원적이고 순수한 공동체”(카롤린 엠케 2017)라는 표상을 추구하는데서 비롯되는데, 한국사회에서 여성·동성애자·외국인노동자·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가 폭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2017)의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기타남성, 기타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¹⁾ 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사회도 혐오사회라 불릴 만큼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과 혐오폭력이 만연되어 있음

[그림 1]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



[그림 2]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7),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참조

- 이와 같이 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혐오사회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함

1)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국가인권위원회, 2017)을 말함

□ 배제가 아닌 공존의 포용국가

- 사회적 배제는(social exclusion)는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에 따른 특정 집단이 사회의 주류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상을 말하며, 배제된 집단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회가 제약됨
- 포용은 배제되어 있는 소수자(집단) 주류사회로 통합되는 것과 배제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삶의 기회를 보장받는 과정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회로의 접근 보장과 실질적 참여, 혜택의 향유 등을 말함
-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함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로 정의함

[표 1]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3대 비전	9대 전략
사회통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사회서비스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사회혁신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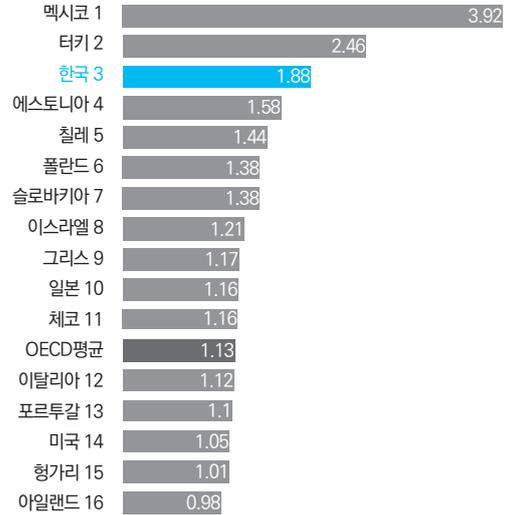
- 2017년 서울시는 포용도시를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도시정책을 지향, 실천하는 도시”(서울연구원, 2017)로 정의하고,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를 개발함

- 포용도시, 포용사회, 포용국가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본원리로 ‘포용성’을 내세우는데, 포용성은 ‘다름’을 통해 서로의 존재와 문화를 인식하고 공유하며 공존하는 즉, 문화다양성에서 출발해야 함

2.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필요성

□ 혐오와 배제, 폭발하는 사회갈등

- 현재 한국사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거나 상대의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이 폭발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1.88(OECD 평균 1.13)로 전체 35개국 중에서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연평균 14.4%씩 증가하여 175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양성평등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성 격차지수는 144개국 중에서 116위(세계경제포럼, 2016년)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함



[그림 3] OECD국가별 사회갈등지수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OECD, 2016 (뉴시스 보도(2016.11.21.)에서 재인용)

□ 포용의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은 특정 집단(문화)이 모든 것을 독식하거나 자신의 집단(문화)으로 다른 집단(문화)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집단 간 차별과 배제 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 즉 ‘차이(다름)’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유하고, 공존하는 것(가치관, 또는 삶의 방식)을 말함
 - 145개국(한국 포함)이 비준한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4조 정의에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Cultural diversity refers to the manifold ways in which the cultures of groups and societies find expression)”이라고 명시돼 있음²⁾

2) 1990년대 세계화 이후에 등장한 문화다양성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발전위원회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ity Diversity)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고 2005년 유네스코 제33차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을 채택하면서 공식화됨

-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공모에 의한 구조적 폭력이며, 이러한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의 첫출발로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의 원리가 필요함
- 특히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창조를 통한 창의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 포용국가, 포용사회, 포용도시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문화주의가 ‘타자에 대한 인정과 환대’를 의미한다면,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차이를 인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바라봄으로써 창의적 지역발전을 견인함

3. 사례로 본 전북의 문화다양성

□ 다른 종교 손을 잡고 걷어가는, 세계 유일의 종교문화축제

- 원불교·개신교·불교·천주교 등 4대 종단이 참여하여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종교문화축제는 이웃종교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함으로써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 세계 유일의 종교화합축제임
 - 2012년부터 세계순례대회로 열리던 행사가 2015년 4대 종단으로 이뤄진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주관하여 세계종교문화축제로 개최되고 있음
- 세계종교문화축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교전쟁과 달리 서로의 손을 잡고 상생의 정신을 나누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음

[그림 4] 세계종교문화축제 포스터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입주 논쟁

- 종교의 공존을 통한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와 달리, 이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차별과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3) 할랄(Halal)은 허용된다(permissible)의 뜻으로, 이슬람법에서 일상과 관련된 사항(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이 허가됐다는 것을 의미함

- 2015년 박근혜대통령의 중동순방 이후 국가경제전략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³⁾ 수출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이 검토되면서 지역에서 할랄단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대통령 발언만으로 할랄식품단지를 졸속으로 지정하려 했다는 것이 반대여론을 형성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긴 했으나, 당시에 제기된 반대여론에는 상당부분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었음
 -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식품을 위한 도축장이 들어서고 무슬림들이 무차별 유입돼 무슬림거주지가 형성되어 이슬람국가(IS)의 동북아 테러기지가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등장했음

[표 2] 할랄식품단지 입주논쟁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오해에 대한 설명

오해	해명
5,500억 원 들여서 익산시에 할랄식품단지를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에는 할랄식품 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50만평을 할랄식품기업에게 50년간 무상임대, 정착지원금 1인당 1,500천원 지원	· 50년간 무상 임대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외국인투자 토지임대료 감면제도는 할랄과 무관하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998년부터 운영 중임 · 지원금 1,500천원은 전북도(1,000천원)·익산시(500천원)가 전북·익산 시민을 채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6개월간 제공하는 고용지원금임
할랄 도축장이 건립될 예정이고, 3년 안에 이맘 100만명 및 무슬림 도축인 7,103명 1차 동시 입국 예정	· 국내 할랄식품기업에 무슬림 고용의무 없음 · 식품공장 등 제조·가공 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며 할랄도축장 등 단순시설의 입주는 금지됨
종교시설, 무슬림병원, 학교 등을 신축, 무슬림거주지 형성되어 테러의 배후지가 됨	· 공동주택, 종교시설, 상업시설 부지 등은 설치 계획이 있으나, 이슬람 등의 특정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비무슬림국가에서 할랄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 (일본) 할랄 도축장 설비지원(50% 보조), 할랄인증 비용 지원(보조 50%)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랄식품 관련 지원 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 브리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 21일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할랄식품기업의 입주 수요(조사기업 108개 중 입주의향업체 3개소)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당장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별도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음”이라고 발표함

□ 영화표현의 해방구 전주국제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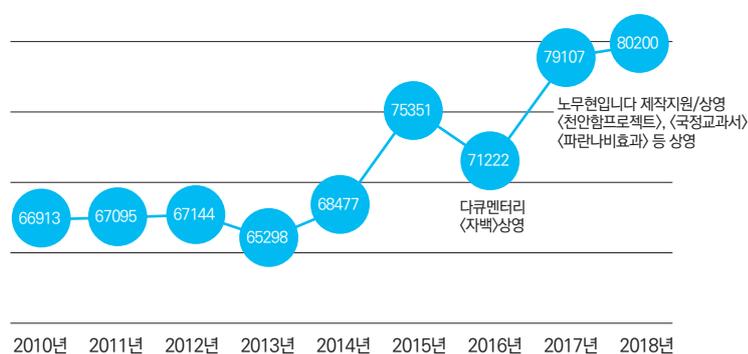
-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못하면서 영화제가 파행을 겪은 반면, 2016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여러 입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자백>이 상영되었음

[그림 5]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자백>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한 <다이빙벨>



- 이후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시사성 있는 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상영하였고, 영화 <노무현> 제작을 지원하면서 영화인을 비롯한 대중으로부터 영화표현의 해방구라는 호칭을 얻으며 흥행에 성공함

[그림 6] 전주국제영화제의 연도별 유료 관객 수 (단위: 명)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이빙벨> 영화 상영을 취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영화표현이 다양한 전주국제영화제로 관객이 몰려 2015년 전년 대비 유료관객이 대폭 증가했으며, 2016년에 관객이 전년 대비 줄었으나 2016년 국정원의 간첩조작을 다룬 <자백>이 상영되고 2017년 <노무현입니다>를 비롯하여 <천안함프로젝트>,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다룬 <파란나비효과> 등이 상영되면서 역대 최고 유료관객 수 기록을 경신함

□ 전주퀴어문화축제 논쟁

- 2018년 3월 12일 전주퀴어(Queer)문화축제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4월 7일 전주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전주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함

- 전주퀴어문화축제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되었고, 전주시기독교연합회는 4월 1일 부활절에 연합예배에 이어 전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거리행진을 가짐

[그림 7] 전주퀴어문화축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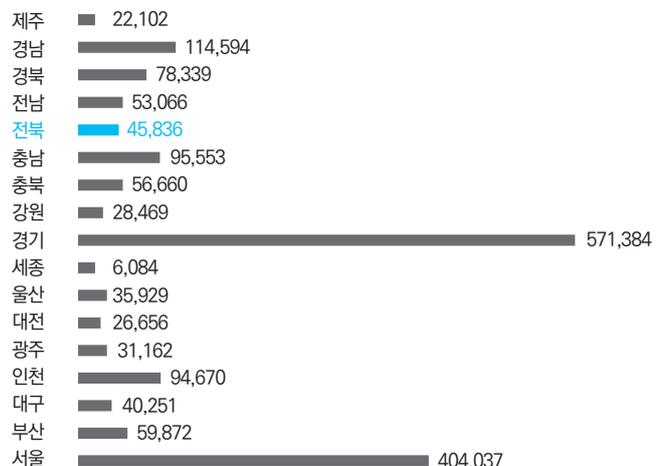
[표 3] 퀴어축제 반대 의견 (언론보도 참조)

전주의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풍남문은 전주에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까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한 시민은 “교육의 도시, 양반의 도시라는 전주에서 이런 축제가 열린다니 갈수록 말세다. 반대 집회에 꼭 참여하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퍼지게 된다면 제대로 된 성적체성 교육을 가정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신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만나 살아가라고 한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다. 기독교 심계명으로도 금지된 일이기에 전주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⁴⁾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정 분야에 대한 혐오표현

-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764,664명(전라북도 45,836명, KOSIS)에 달하고,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사회가 강조되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혐오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이에 반해 특정 종교(이슬람)와 종교인(무슬림), 성소수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과 달리 혐오표현이 강하게 나타남
- 세대 간 갈등이 외연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은 오래된 도시의 특징으로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다는 불만이 적지 않으며, 서울에서 불붙은 페미니즘 논쟁 역시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전라북도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예술적 표현 또는 타 문화와의 공존이 일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활동이 확산되도록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그림 8] 지역별 외국인주민 수(2016년 기준)



4.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정부의 정책 현황

- 우리나라는 2005년에 유네스코 협약의 비준국이 되었으며, 협약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법률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아직 법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다양성 관련 기본계획도 공식화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추진되거나 새롭게 구상되는 사업 대부분이 법률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국한되면서 기존의 문화복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표 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관련 기관

문화다양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다리사업 ·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학교/사회/소외계층) · 문화나눔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 사업 · 다양성 영화지원 및 인디음악 지원 사업 · 국제 문화원조 사업(쌍방향 문화교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자체의 정책 현황

- 광역시·도 대부분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거나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단순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정부사업이 보이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는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대외협력국에서 문화복지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업과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함

4) <http://www.missiontoday.co.kr/archives/6398>(미션투데이, 2018.9.10 검색)에서 재인용

[표 5] 전라북도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부서		주요사업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 유산과	· 종교문화 기반시설 확충 · 산사에서의 깨달음과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운영 : 8개 사찰 · 상생의 보편가치 전파 종교문화 지원: 세계종교문화축제(10월중)
	문화 예술과	·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도민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문화이용권, 도립국악원 찾아가는 예술단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도 단위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대외협력국	국제 협력과	·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 등
	국제교류 센터	· 전북국제교류페스티벌 개최 · 국제교류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사업 확대 · 도민 국제화 마인드 제고 사업 추진: 국제정세(정치·경제·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도민 국제교류 이해강좌, 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추진, 도내 거주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북 등) ·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민간주도 풀뿌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계 마을간 교류사업 연계지원, 우수 민간국제교류사업 발굴 및 지원 ·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외국인 생활기반 지원

자료: 전라북도(2016), 실국별 2017년 업무보고 참조

□ 문화다양성 정책의 과제

- 문화다양성은 외국인주민, 또는 특정종교나 성소수자 등 특정대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가치와 철학’으로 인식되어야 함
 -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를 보는 기본원리이자 포용국가를 위한 가치로서 이해되지 못하고,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단순 지원정책 또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만 이해되고 있음
- 특히 문화다양성은 개인이 혐오표현과 혐오폭력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예, 전주국제영화제의 관객 수 증가)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가 포용적 지역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조례 제정’

-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원리이자, 지역을 운영하는 가치와 철학으로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필요함
- 2016년 전라남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최초이자 유일하게 2017년 11월 30일에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표 6]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8-01-05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16
부산시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22
경기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13
광주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8-07-24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2-01
전남 목포시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2-13
전북 익산시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30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10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6-02

-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철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 문구와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호혜를 베푸는 개념이 아니라 ‘타자성(他者性)’에 입각하여 문화다양성의 철학이 담기도록 노력해야 함

[표 7] 익산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

익산 조례 내용	추가 혹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
제1조(목적)	· ‘문화적 삶의 질’의 표현은 문화다양성 정책을 문화향유정책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음
제2조(정의)	· 문화적 차별과 관련하여 문화적 표현 외에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포함함으로써 문화예술에 국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제3조(시장의 책무)	·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지원에 국한되어 있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현재 위원회는 정책 담당부서의 장과 일반인까지 포함하여 공개모집한 사람, 전문가 등의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다양성과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및 소수자 관련 활동가가 일정비율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제9조(실태조사)	· 문화다양성 침해사례,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 등의 활동 현황, 문화다양성 관련 소수자의 현황 등이 실태조사 내용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
제10조(문화다양성 교육)	· 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은 문화다양성 교육과 무관하고, 자칫 전통문화의 다양성 확보 등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한정될 수 있음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	·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분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한하여 문화다양성의 영역이 축소되어 보임

□ 혐오표현을 금지·규제하는 ‘제도 마련’

- 현재 법률 여건 상 문화적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나, 국회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으며 다른 국가(유럽 및 일본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례가 있음
-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기관·단체 등의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 등은 가능함
- 따라서 공공 및 민간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나 표현이 발견되면 현행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차원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마련함

[표 8] 혐오표현과 관련한 일본의 조례 사례

오사카 시의회 조례	· 혐오범죄 처리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인 「오사카 시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2016년)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하여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집단을 ①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②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③ 증오 또는 차별의식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 중의 하나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a) 상당한 정도의 모욕 또는 비방 또는 b) 위협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가 표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 시장은 도시 등에서 행해지는 표현활동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오사카 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표현내용의 확산 방지조치와 행위주체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7),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현안보고서(제306호), 30~31쪽에서 인용

□ 지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 문화예술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아니라, 민족, 인종, 신체능력(장애), 종교, 성, 나이(세대), 사회적 신분 등의 문화적 차별과 표현에 대한 현황, 관련 활동 및 인력, 문화다양성 침해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정부의 정책추진 일정에 발맞춰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 종합계획에 담겨야하는 내용은 위원회 등의 체계 구축,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가 및 단체 육성,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예, 문화다양성학교) 등임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7),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2017),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현안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2016.1.21.),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 브리핑 자료
 - 서울연구원(2017),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정책보고서
 - 카롤린 엠케(2017), 『혐오사회』, 서울: 다산북스
 - 미션투데이(2018.3.28.), 전주시민, “전주퀴어축제 반대한다” 목소리 높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